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가단52303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정한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윤희상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희창

변론 종결2021. 10. 1.

판결 선고2021. 11. 12.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밀양시 D 전 562m², 위 E 전 288m², 위 F 임야 407m²의 각 1/2 지분에 관한 2020. 1. 21.자 증여계약합의해제를 2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 1) C은 2018. 10. 16.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9,538,510원을 '대출만료일 2028. 10. 16., 대출이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소정의 변동금리'로 하여 대출받았다.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C의 위 대출금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39,538,510원, 보험기간 2018. 10. 16.부터 2028. 10. 16.까지, 피보험자 소외 은행'으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C은 2018. 10. 17.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H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여신일로부터 5년, 대출이자 연 16.44%'로 하여 대출받았다.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8. 10. 17.부터 2023. 10. 17.까지, 피보험자 소외 H은행'으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3)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인 C의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각 피보험자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각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은행	35,733,986원	2020. 1. 16.	2020. 5. 11.	2020. 6. 9.	35,733,986원
소외 H은행	20,000,000원	2020. 1. 18.	2020. 5. 15.	2020. 6. 1.	16,676,586원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등

- 1) 피고는 2018. 4. 19. 밀양시 D 전 562m², 위 E 전 288m², 위 F 임야 407m²(이하 이들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8.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8. 9. 1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18. 9. 21. 위 각 지분에 대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2020. 1. 21.자 증여계약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 23. 접수 제2243호 소유이전등기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말소등기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55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조합'인 2014. 4.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이 사건 말소등기 이후인 2020. 7. 27. 말소등기되었다.

라. 피고와 C의 신분관계 및 C의 재산상태 등

1) 피고는 2015. 8. 21. C과 혼인하였다가 2020. 2. 20. 협의이혼하였다.

2) C은 이 사건 합의해제가 있을 무렵 무자력이었고 이 사건 지분 외에 담보가치 있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 7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가부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하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다438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은 이 사건 합의해제 전인 2018.

10.경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은행, 소외 H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던 점, C이 위 대출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리금지급이 연체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해제 직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합의해제는 위 보험사고 직후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후 불과 4개월 남짓 후 C을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일응 이 사건 합의해제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부 등에 관하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무자력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거나 그 담보제공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C이 이 사건 합의해제 무렵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지분 외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하게 보유하던 재산가치 있는 이 사건 지분을 이 사건 합의해제를 통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합의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중 1인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의 항변 등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8. 무렵부터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간병을 독려하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간병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C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증여를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지분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나) C은 소외 은행, 소외 H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K에게 대여하였다. K이 대여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C 역시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황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가 C와 통모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고 이 사건 말소등기를 한 것도 아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로써 원고 등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86. 3. 15. 소외 L과 혼인하였으나 2009. 1. 6.경 C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4. 2. 10. L과 협의이혼한 후 2015. 8. 21. C와 혼인신고한 사실, 피고는 2018. 2. 21.경 '십이지장의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투병을 시작한 사실, 피고는 그 직후인 2018. 4. 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8. 9. 17. 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직후인 2020. 2. 20. C와 협의이혼한 사실, C은 K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을 8호증의 일부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써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해제로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일응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등

가. 가액반환의 법리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는데, 만일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법원이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 그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잔액 상당을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부담하는 가액반환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나. 가액반환의 범위 등

1) 앞서의 인정사실과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55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합의해제 후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말소등기된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이 원금만 52,410,572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로되, 반환할 가액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으로 추정되는 위 매매대금 7,000만 원(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에 해당한다)의 1/2인 3,500만 원과 원고의 구상금채권 등 52,410,572원 중 더 적은 3,5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원고가 위 범위 내인 2,4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구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할 범위는

2,450만 원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는 2,4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소병석